

의안번호	제139호
의결연월일	2019. 10. 22.

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10월 14일 논산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19년 10월 14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19년 10월 22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 설명자 : 안전관리팀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의 개정으로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규정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, 기존의 논산시 「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